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DATAWAREDA# v5.0, DataWareMeta# 4.0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엔코아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6,485,0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(주)엔코아 (인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D'Amo V4.0, 13-16Core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테드넷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4,506,8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(인)

"을" : ㈜ 테드넷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TonchEn nxWeb v1.0, Non-ActiveX(Multi-Browser)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라온시큐어(주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2,002,000 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라온시큐어(주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K-Defenser R7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킹스정보통신㈜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4,168,000 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킹스정보통신(주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
- UBI SAFER-PSM V3.0

○ 물 품 명 :
- U-Privacy Safer V4.0

○ 발주자(갑)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○ 제조사(을) : ㈜이지서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6,240,000 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(인)

"을" : 주식회사 이지서티 (인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e-Page SAFER V2.5, Basic Package & Zero Client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마크애니㈜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5,852,000 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㈜마크애니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CLIP report v5.0, 4Core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(주)한컴이노스트림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20,512,8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(주)한컴이노스트림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MESIM Indigo ESB v2.5, Adaptor, 1Server**
MESIM Indigo ESB v2.5, Server(18 Core)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메타빌드㈜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34,230,0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메타빌드(주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엑스빌더6 v1.0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토마토시스템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7,024,0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7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㈜토마토시스템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깃플쳇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주식회사 쿼터백그룹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1,816,000 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주식회사 쿼터백그룹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I-Mailer v6.0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IWU네트웍스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2,100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(주)아이더블유네트웍스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BI솔루션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위세아이텍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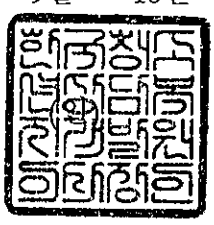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00,000,000 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

"을" : 위세아이텍

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- ax-gate 1300S(4식)**
- ssl_axgae200(2식)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엑스게이트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**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3,081,656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주식회사 엑스게이트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bandi sso 7.0 server Engine 및 agent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반디에스앤씨(주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3,600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8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반디에스앤씨(주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- Genian NAC Suit V5.0**
- Genian NAC Suit V5.0(차단센서)
- Genian NAC V5.0 agent
- Genian GPI V4.0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지니언스 주식회사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6,517,28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지니언스 주식회사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CrossNet V4.0, GM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소프트위드솔루션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1,950,400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㈜소프트위드솔루션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Cisco, C1000-48T-A 등 8식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일에이엔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2,054,7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8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일에이엔 작사허나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- KR580S1-308D2**

○ 물 품 명 : **- DL360 G10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공급사(을) : **디와이솔루션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7,810,000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디와이솔루션 김 동 수 (인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Nutanix Acropolis V5.16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뉴타닉스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32,775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코오롱베니트(주)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크리니티메시징v9.0, 스팸브레이커v7.0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크리니티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32,370,646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크리니티㈜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Synap Document Viewer 2022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사이냅소프트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2,812,8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사이냅소프트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데이터스토리v1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넷스루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·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2,800,000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주식회사 넷스루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

○ 물 품 명 : - 알메이트-차트v3.0
- 알메이트-맵차트v4.0

○ 발주자(갑)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○ 제조사(을) : 리아모어소프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2,475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㈜리아모어소프트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MagicLine for Web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드림시큐리티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9,603,996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(주)드림시큐리티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Search Formula-1 V5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와이즈넛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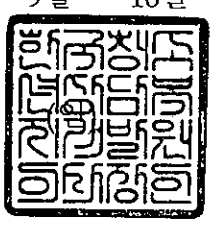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**10,595,200원**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6일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

"을" : 와이즈넛

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- Sparrow SAST/SAQT V5.6 Server**
- Sparrow SAST/SAQT V5.6 User

○ 발주자(갑)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○ 제조사(을) : 스패로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4,928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주식회사 스패로우

<별지 제9호 서식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**

○ 물 품 명 : **셀파모니터링v5 2식**

○ 발주자(갑) : **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**

○ 제조사(을) : **㈜셀파소프트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"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부가세 포함 10,780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

"갑"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"을" : ㈜셀파소프트 박 기 범 , 서 강 교